

현대평화운동과 지구 공동체의 과제

유경동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국제평화
3. 인권평화
4. 군사평화
5. 종교평화
6. 시민평화
7.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평화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조건’이다. 현대의 지구사회에서 인간과 국가 공동체의 기본적 조건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과 같은 단체들의 등장이 나뉘대도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륙과 지역에 따른 국가 간의 경제 불균형과 불평등으로 초래되는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도 경제정의의 문제가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핵억제와 군축을 통한 군사평화의 지속적인 노력이 눈에 띠고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를 넘어서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한 인권문화의 증진과, 종교인들의 화합을 통하여 지구촌 평화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 또한 현대 문명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평화정착의 이면에는 여전히 극복하여야 할 과제가 산적하여 있다. 국제사회에서 정의의 잣대가 되어져야 할 ‘국제연합’의 역할이 강대국들의 영향력에 의하여 그 입지가 매우 약한 것이 현실이다. 경제문제와 연관하여 현대 국제사회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주축으로 하는 ‘세계화의 확산’과 이에 대한 약소국가들의 저항으로 갈등이 점점 증폭하고 있다. 각국의 시장경제를 세계화함으로써 “지구 시민에게 자유시장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라!”는 구호는 일견 희망찬 미래를 제시하는 듯 하지만 시민의식과 인권의 세계화가 없는 단지 시장의 세계화는 인간이 경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결과를 자초하여 지구사회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전인 ‘정당전쟁’론은 오히려 전쟁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여주어 그 본래적 의미가 퇴색하여버렸다. 따라서 전쟁과 테러로 목살을 겪는 현 지구사회에서 핵과 같은 무기는 폐기되어야 하고 각종 군사무기의 생산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보’의 논리 속에 각국의 군사력은 계속 증강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의 신장과 종교의 대화를 통한 평화의 노력은 여전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경제문제와 군사정책의 사안과 연관하여 그 역할이 매우 축소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와 같은 현대 사회의 평화문제에 대하여 필자는 미래 공동체의 평화과제에 대하여 살펴보되 지난 100여 년에 걸친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단체들의 사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¹⁾ 첫째, 평화사상가들의 이론을 국제, 인권, 군사, 종교의 관점에

1) 현재 알려진 바로는 전 세계에는 300여개 이상의 평화상이 있지만 알프레드 노

서 나누어서 각각 그 핵심 사상을 정리하여 보겠다.²⁾ 둘째, 위와 같은 네 가지의 평화개념들을 축으로 미래공동체가 지향하여야 할 ‘시민평화’의 대안이 무엇인지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평화에 근거하여 미래 지구공동체가 전개하여야 할 평화운동의 목적을 간략하게 제시하도록 하겠다.³⁾

2. 국제평화

국제단체의 중재를 통하여 국제협력을 이끌어 내거나 또는 군사적 힘의 균형을 통하여 평화를 지키려는 국제 정치적 노력은 다수의 행복을 위한 공리주의적 관점과 비슷하다. 국제기구를 통한 평화운동은 국가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여 나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를 신장하는 것이다.⁴⁾ 특히 세계 1,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은 국제사회에서 각 국의 갈등을 조정할 ‘국제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정치공동체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국제기구의 창설로 나름대로 지구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는데 이

벨(Alfred Nobel)을 기념하여 제정한 노벨 평화상이 나름대로 현대의 평화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이 상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수상단체와 개인의 ‘평화’ 사상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 2) 이 글에서 분석한 평화사상은 노벨평화재단의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노벨평화 수상자의 ‘노벨수상기념 강’ 및 ‘수상 소감’ 그리고 ‘수상자 소개’의 글 등을 참고하였다. 참고) All Nobel Peace Prize Laureates. The Official Web Site of the Nobel Foundation Copyright © Nobel Web AB 2008, Nobel Prize. Org. 이하 각주 인용의 경우는 ‘NPPL’로 통일한다. http://nobelprize.org/nobel_prizes/peace/laureates. 이하 노벨 평화상에 나타난 평화사상에 대한 분석은 필자의 선행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유경동, 『평화와 미래』(이부키, 2010)
- 3) 필자는 이 글에서 ‘현대 평화’의 이론적 범주를 20세기, 즉 1900년 초 이후의 평화사상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 4) 한국정치학회 편,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 5: 국제정치와 안보』(법문사, 2008), 143.

바지 하고 있다.

현대의 국제평화운동을 살펴보면 20세기 전반에는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의 평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국가 간의 연합과 국제협력, 그리고 국제중재의 필요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 내 의회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기도 하였으며 평화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회의를 주장하기도 하였다.⁵⁾ 이와 같은 노력으로 ‘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20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 주도하에 창설되었다. 이후 1945년 ‘국제연합’(UN)이 발족되어 2010년 현재 192 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연합’을 통한 국제평화 증진은 자연히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공정한 국제조약의 수립’과 더 나아가 ‘강력한 국제연합의 조직’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⁶⁾ ‘국제연합’의 조직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경제적 평화’가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공

5) 이하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나 단체를 소개할 때 괄호안의 숫자는 수상년도를 말한다. 국제평화 사상가들로는 프레데리크 파시(Frédéric Passy, 1901), 샤를 알베르 고바(Charles Albert Gobat, 1902), 베르타 폰 주트너(Baroness Bertha Sophie Felicita von Suttner, 1905),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1906), 에르네스토 모네타(Ernesto Teodoro Moneta, 1907), 클라스 아르놀드손(Klas Pontus Arnoldson, 1908), 프레데레그 바예르(Fredrik Bajer, 1908), 에스투르넬 드 콩스탕(d'Estournelles de Constant, 1909)과 오귀스트 베르나르트(Auguste Marie François Beernaert, 1909), ‘국제평화국’(1910), 토비아스 아세르(Tobias Michael Carel Asser, 1911)와 알프레트 프리트(Alfred Hermann Fried, 1911), 그리고 일라이휴 루트(Elihu Root, 1911)를 들 수 있다.

6) 전술한바 1919년에는 미국의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이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을 설립을 위한 노력으로, 그리고 1926년에는 아리스타르 브리앙(Aristide Briand)과 구스타프 슈트레제만(Gustav Stresemann)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창립에 공헌한 이유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1927년에는 페르디낭 뷔송(Ferdinand Edouard Buisson)과 루트비히 크비데(Ludwig Quidde)가 국가 간의 상호 호혜적 관계성을 강조하며 보다 공정한 ‘국제조약이 수립’을 위하여 노력한 공로로 수상하였으며 코델 헬(Cordell Hull, 1945)과 에밀리 그린 발치(Emily Greene Balch, 1946) 또한 각각 강력한 ‘국제연합’의 조직과 ‘국제연맹’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포를 통한 전쟁의 억제'보다는 점차적으로 '정치를 통한 국제관계'를 중시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 국제사회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한 국제연합의 '군사력' 필요성을 더욱 요청하게 되었다.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간 협력은 무력에 대한 억제보다는 국가 간의 '보충적 협력'과 국가 간 '책임감과 화해를 통한 평화'와 같은 국제 정치적 소통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었다. 한편 각 국가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국제연합의 초국가적 권위에 대하여 중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⁷⁾ 따라서 국제연합 산하 UN 평화유지군(UN peace-keeping force)이 1948년 창설된 이래 2010년 7월 현재 세계 국가들 간의 평화와 휴전 협정에 대한 이행과 감시의 활동을 16개 지역에서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현대의 평화사상가운데 국제협력을 통한 평화 개념은 지난 100여 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국제사회는 당연하게 각 국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초국가적 국제기구를 발족하기 위하여 각 국가 간의 의회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이러한 국제기구는 각 국가가의 분쟁을 조정하며 국가 간 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과

7)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1971)는 평화에 근거한 국가 간의 '보충적 협력'을 강조하였고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1973)는 모든 국가들 사이의 '책임감과 화해를 통한 평화'를 강조하였으며, 오스카르 아리아스 산체스(Oscar Arias Sánchez, 1987)는 각 국가들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서 'UN의 권위'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UN 평화유지군'(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s, 1988)도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1996년에는 '분쟁지역에 필요한 평화의 과정'을 중시하여 동티모르 독립 운동에 기여한 호세 라모스 오르타(José Ramos-Horta)와 카를로스 시메네스 벨로(Carlos Filipe Ximenes Belo)가 주목을 받았다. 한편 마르티 아티사리(Martti Ahtisaari, 2008)는 인도네시아 아체 문제와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책임을 강조하는 ‘국제법’의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⁸⁾ 아울러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가 1922년 ‘국제연맹’ 창설과 더불어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전쟁 억제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국제연합’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가 설립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공조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⁹⁾

둘째, 국제사회는 ‘국제연합’과 ‘국제평화유지군’의 정치적 권위에 더욱 더 많은 무게를 실어주게 되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가

8)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맥락에서 국제간의 평화를 수행하는 안전장치인 국제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법은 주로 전쟁 갈등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인간의 안보가 가장 위협 받는 시기에 제정되었다. 국제법은 전쟁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분쟁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예컨대, 전투원이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규칙과 원리들과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국제법은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전쟁을 피하기 위한 정신에 근거한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법은 국가 간 뿐 아니라 내전 갈등 상황을 다루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내전이라는 새로운 국면 안에서 민간인은 더욱 폭력에 노출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법도 변화하는 세계에 맞추어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르완다 국제 형사 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의 ‘보안 법률 제정회’에 의해 채택된 ‘내전 갈등으로 인한 전쟁 범죄에 대해 승인된 법률’과 같은 것은 주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인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전쟁갈등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적 분쟁이나 평시에도 적용된다는 국제법의 명확한 선언은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이기도 하다. 이와 동시에 더 많은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범위 확장을 요구하는 조치도 이어졌다. 1999년 제네바 협정 50주년을 맞아 유엔사무총장은 ‘국제연합’군이 전투부대로 개입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의 근본적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국제법과 국제인권법의 점진적 상호작용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참고) Rob Mcrae and Don Hubert,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uman Security and the New Diplomacy - Protecting People, Promoting Peace*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1), 161-164. 재인용, 유경동, 『평화와 미래』, 58-59.

9) ‘국제사법재판소’는 2차 세계대전 후 ‘상설국제사법재판소’를 이어서 1945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되었으며 국가 간 영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적인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포를 통한 전쟁의 억제’를 넘어서 국가 간의 ‘보충적 협력’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은 세력균형으로 분쟁을 억제하려는 현실주의적 관점이나 평화에 대하여 낭만적인 정치적 낙관주의를 극복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과 협력을 강조하고 동시에 국제적 차원의 도덕성을 준수하는 정치적 소통과 이성의 합리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셋째,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의 출현과 아울러 국제법을 통한 평화의 증진은 자연히 국제사회에서 국가도 도덕적 책임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요구가 증대되게 되었다. 이는 또한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평화의 문제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인간의 기본권에 대하여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현대 평화개념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을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는 국제공조를 통한 국가 간의 협력과 아울러 동시에 이러한 국제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각 국가에서 개인의 인권확립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국제사회에서의 문제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국제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권력도 세계열강의 이해관계에 의해 그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¹⁰⁾ 따라서 현대 평화의 과제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제기구의 역할과 아울러 세계 공동체에서의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능력의 신장이 절실하게 요청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정의로운 평화를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각 국가 내 올바른 ‘권력’이 요청된다고 본다. 형식적으로 보면 국제권력을 장악

10) ‘국제연합’의 한계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회원국가간의 권력 불균형의 문제이다. 국제연합에 참여한 국가들은 총회에서 각각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보장이사회’ 내 강대국의 국익에 의하여 UN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는 UN의 유지를 위한 회원국가들의 분담금에 관한 문제이다. UN 조직은 총회에서 결정한 각 국가의 분담금에 의하여 유지가 되는데 실제로는 각 국가의 경제력 규모에 따라 분담금이 결정되는 만큼 실제 그 분담금의 차이에 따라서 UN의 영향력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하는 정치력은 그러한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올바른 정치력과, 그 구성원이 되는 각 국가의 도덕성, 그리고 국가 내 정의로운 ‘시민의 힘’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올바른 권력만이 올바른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대 국제사회에서 필수적인 과제는 국제사회의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각 국가의 도덕적인 권력과 각 국가의 권력을 올바르게 구성할 수 있는 국민의 정치적 능력이 함께 요청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의 과정을 수반하며 그 평화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도덕적 성숙이 함께 신장 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 장에 살펴볼 ‘인권’의 주제는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3. 인권평화

인권이란 “한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부터 기인하는 권리이면서, 도덕적 원리, 또는 도덕적 이유에 근거하여 존재한다고 단언되는 권리”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¹¹⁾ 인권에는 필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무가 수반되는데 첫째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피할(avoid) 의무이며, 둘째로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반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protect) 의무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침해당한 자를 도와줄(aid) 의무이다.¹²⁾

그러나 이와 같은 의무에 근거한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 사회·정치·경제·정치적 규범이 혼란에 빠지거나 경쟁하는 새로

11) Nigel Dower, *An Introduction to Global Citizenship*(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3), 55.

12) Nigel Dower, 위의 책, 57.

은 가치규범들이 서로 충돌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사안들이 발생하게 된다. 즉 기층질서의 가치를 지속하려는 세력과 이를 저항하는 세력사이의 가치가 충돌할 때 인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¹³⁾

인권의 침해는 따라서 평화가 지켜지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평화가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는 조건’임을 전제할 때 인권의 침해란 결과적으로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다.¹⁴⁾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인권이 지켜지려면 국가 간에 공조를 통하여 더 개선된 인권문화가 수호되어야만 한다. 즉, 국제사회에서는 각 국가는 인간의 생명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전 지구적인 공공선을 수호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 내에서도 국제 인권지표에 따라서 인권의 의무를 수용하고 실행하여야 하는 것이다.¹⁵⁾

국제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인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이 있다. 이것은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다양한 국제조약들로 구성되어있는데 특히 1966년 21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인권규약’과 1998년 ‘로마협약’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국제 인권법’은 ‘국제인권규약’ 또는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하며 그 중 ‘국제인권법’의 규범을 담고 있는 대다수 국제관습법규는 구속

13) Michael S. Lund, "Human Rights: A Source of Conflict, State Making, and State Breaking," Julie Mertus et al., *Human Rights and Conflict: Exploring the Links between Rights, Law, and Peacebuilding*(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6), 40.

14) 필자 주) 일반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은 1) 국민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자유권’, 2) 신분이나 성별, 종교, 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받기 위해 필요한 ‘평등권’, 3)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참정권’, 4) 국민이 공정한 재판받을 등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청구권’, 그리고 5) 국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사회권’으로 구성된다.

15) Nigel Dower, *An Introduction to Global Citizenship*, 58-59.

력이 없는 국제인권법문서로 존재하며 국가관행과 국제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관습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그 핵심은 두 가지 의무로 요약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국가가 모든 인류를 그 시민 주체로서 존중해야 할 의무와, 다른 하나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나 국제단체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이다.

특히 ‘국제인권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그리고 A규약과 B규약 각각의 ‘부속 선택의정서’로 이루어져 있다. ‘A규약’과 ‘B규약’ 및 그리고 ‘부속선택의정서’는 각각 1976년 1월과 3월에 발효되었다. 한편 ‘세계인권선언’의 경우, 도의적인 구속력은 지녔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었던 것에 반해, ‘국제인권규약’은 제약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현재 국제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인권법’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생긴 것이다. 그 이전의 ‘국제법’의 경우 그 내용이 국가 간의 관계에만 제한되었기 때문에 각 국가 내 개인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각 주권국가의 정부는 인권의 사안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개입 없이 자국민들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었다.¹⁷⁾ 그러므로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법’으로는 인권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어떠한 조치도 가능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개별 국가의 국민은 각 국가나 영토에 부속된 존재로서 이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2차 세계 대전을 치루면서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문제는 국가 주체 간 전쟁과는 관계없는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과 연관된 수많은 인권피해

16)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국제인권법’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에 근거하여 조약, 국제관습법 및 국제기구의 권고나 결의를 통하여 인권에 관계된 개별 국가의 국내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7) Ellen L. Lutz, "Understa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Armed Conflict," Julie Mertus et al., *Human Rights and Conflict: Exploring the Links between Rights, Law, and Peacebuilding*(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6), 23-24.

사례가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제인권법’과 같은 국제법은 전술한바와 같이 대부분의 여타 국제법들과 마찬가지로 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전 예방으로서의 효력이 있기보다 사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국제수준의 사회규범 차원에서만 일부 효력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에 가입한 국가들에 한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에 평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가 지켜야할 범세계적인 가치체계로서 도덕적 의무를 가지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¹⁸⁾ 따라서 인권과 연관된 세계평화의 흐름은 위의 인권법의 한계를 보강하고 범지구적인 인권문화를 신장하며, 나아가 각 국가나 영토를 넘어서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권과 관련된 현대의 평화사상은 정치적 차원의 대화기술이나 획일적인 폭력의 부재를 강조하는 평화뿐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권리’를 다룬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즉 개인과 그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와 국가의 도덕성을 선도하는 국제사회의 인권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인권의 사안을 중시한 것이다.

현대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수립을 통한 평화 사상은 그 폭이 매우 크며 1, 2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중반서부터 크게 대두하게 되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후 전쟁의 폐허로부터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복구하는 과정은 바로 인권에 근거한 ‘인간성의 회복’이었다.

20세기 중반까지의 현대 국제사회의 인권평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의 평등, 식량의 공급, 국가 내 노조와 노동의 권리, 국제 경제원조의 수혜원칙, 난민의 처우개선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¹⁹⁾ 물론 이러한 인권평화

18) Ellen L. Lutz, 위의 책, 24-25.

19) 그 예로 제인 애덤스(Jane Addams, 1931)는 국제여성의 인권을 강조하였고, 보이드 오어(Lord Boyd Orr, 1949)는 ‘세계평화를 위한 충분한 식량공급’을 주장하였으며, 레옹 주오(Léon Jouhaux, 1951)는 ‘각 국가 내 노동의 권리 회복’을, 그리고 조지 마셜(George Catlett Marshall, 1953)은 ‘전후 유럽 국가들

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세력균형으로 말미암아 제 3차 세계대전과 같은 재앙이 가시권에서 사라짐으로서 예전만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계 도처에서 끊이지 않은 지역분쟁과 테러는 여전히 인권평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세기에 들어 국제사회에서 영토 국가의 개념이 뚜렷해지면서 이제는 강대국과 주변국가, 대륙과 대륙, 지역과 지역 간 경계선 주변의 국가들 사이에서 경제문제와 연관된 이주노동자의 인권, 불균형 무역거래를 통한 인권피해, 생태계 파괴로 야기되는 인권침해, 그리고 해상과 육상에서 영토권 분쟁으로 촉발되는 수많은 인권사태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 국제사회에서의 현실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인권평화의 영역은 다각화되어가고 있으며 난민 처우 개선,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어린이 인권과 복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식량생산을 통한 세계인의 식량 안정, 국제 양심수의 인권보호와 사면, 정치 종교적 양심범들의 인권보호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²⁰⁾

에 대한 경제 원조'를 지지하였고,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1954)는 '난민의 처우 개선과 인권의 존중'을 주장하였다.

- 20) 그 예로 조르주 피레(Georges Pire, 1958)는 난민의 인권을 위하여, 앨버트 루톨리(Albert John Lutuli, 1960)는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비폭력 저항을, 그리고 '국제연합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은 어린이의 인권과 복지에 큰 공헌을 하였다. 한편 르네 카생(René Cassin, 1968)은 '국제연합'의 인권선언 기초를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하였으며 노먼 블로그(Norman E. Borlaug, 1970)는 식량 생산을 통한 '녹색혁명'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아울러 1974년에는 사토 에이사쿠와 손 맥브라이드(Seán MacBride)가 국제 양심수와 사면에 관한 공로로, 1975년에는 안드레이 사하로프(Andrei Dmitrievich Sakharov)가 구소련의 '인권'과 연관된 평화 운동으로 수상하였다. 1976년에는 메리드 코리건(Mairead Corrigan)과 베티 윌리엄스(Betty Williams)가 '어린이 인권'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그리고 1977년에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정치와 종교적 양심범들의 인권을 위하여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이와 같은 인권에 관한 평화운동은 마더 테레사(Mother Teresa, 1979)와 아돌포 페레스 에스키벨(Adolfo Pérez Esquivel, 1980)를 통하여 지속되었고,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Office of the

그리고 20세기 말에는 노동자의 경제적 처우 개선을 통한 인권회복, 인종차별의 철폐, 인도적 의료 활동을 통한 인간의 생존권 존중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념의 장벽을 넘어서 인권회복, 경제적 빈민의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은행설립, 지구촌 주택문제 및 환경문제의 개선 등 많은 영역에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²¹⁾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대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통한 평화운동은 크게 20세기 중반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그 핵심적인 사안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념과 정치를 넘어 인간의 기본 권리와 연관하여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 특징을 정리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인권개념은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을 그 초석으로 하여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의 개선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전후 복구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회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어린이와 노동자, 난민, 그리고 양심수를 아우르는 인권평화로 발전하여나가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국제사회에서 국가 주체간의 평화에 대한 거대 담론에 의지하지 않고 지구촌 구석구석에 방치되어있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1954, 1981)의 난민 이주와 정착을 위한 공헌도 크게 평가되었다.

- 21) 폴란드의 민주화에 기여한 레흐 바웬사(Lech Walesa, 1983)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기여한 데즈먼드 투투(Desmond Mpilo Tutu, 1984),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1991), 리고베르타 멘추(Rigoberta Menchu Tum, 1992), ‘국경없는 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1999), 김대중 전 대통령(2000), 코피 아난(Kofi Annan, 2001), 지미 카터(Jimmy Carter, 2002), 시린 에바디(Shirin Ebadi, 2003), 왕가리 마타이(Wangari Maathai, 2004), 그라민 은행(Grameen Bank, 2006), 앨 고어(Albert Arnold (Al) Gore Jr., 2008)와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2008)등이 이 인권평화의 영역에 속하는 평화운동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있다.

둘째, 위에서 소개한 다양한 인권평화 운동들은 전반적으로 서구의 기독교 영향권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점차적으로 인종과 성, 그리고 종교를 초월하여 인권의 사안이 중대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이념과 문화적 차이의 벽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 정신인 ‘인권’의 사안에 대해 국제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인류사회에서 계속 확장되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셋째, 인권을 중시하는 평화운동이 이제는 인간 중심에서 점차 자연을 중시하는 ‘녹색’ 인권으로 발전하여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생태계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부상한 것이지만 무차별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와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바로 인간의 생명권과 연관된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녹색인권은 점차적으로 녹색에너지 혁명과 연관하여 인간 중심에서 자연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근본적인 평화전략으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4. 군사평화

현대 국제사회에서 전쟁의 사안과 연관된 평화의 문제처럼 심각한 것은 없을 것이다. 전쟁의 문제는 대부분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 국제 정치의 문제와 연관되지만 평화와 연관하여 전쟁의 문제는 대부분 전쟁 발발 후 사후 인권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평화는 전쟁과 정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전쟁의 징후가 감지되는 초기부터 같이 논의되어야 할 동등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²²⁾ 즉, 역

22) 지오프리 블레이니, 『평화와 전쟁』(이웅현 역, 지성, 1995), 342.

설적으로 전쟁은 평화를 필요로 하며 평화는 전쟁을 문제 삼음으로서 평화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전쟁과 평화의 관계를 통하여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전쟁과 평화의 원인은 이와 같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을 이해하면 동시에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인류가 염원하는 ‘전쟁이 없는 국제평화’가 이루어지려면 그 전제는 국제사회에서 주체 국가와 그 국가를 구성하는 인간 행동이 ‘비 전쟁’(not war)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 전쟁’이 ‘포괄적 평화’(inclusive peace)를 의미하기 때문이다.²³⁾ 이것이 전제가 되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단위체로서의 국가는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평화를 수호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평화는 물론 자국의 안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자국을 포함하는 전체 세계의 평화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국제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 없는 국제평화란 각국의 안보를 전제하면서도 각국의 안보는 반드시 전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²⁴⁾

따라서 이 평화와 안보 사이는 일종의 변증법적인 상호 의존성을 가지게 된다. 즉 평화는 안보의 목적이자, 동시에 안보를 이룩할 수단이 되며, 사람들은 안보를 통하여 평화를 누리게 된다. 여기에서 평화는 그 자체가

23) Kenneth E. Boulding, “Peace Theory,” Nicholas N. Kittrie et al., *The Future of Peace*(Washington D.C., Carolina Academic Press, 2003), 53.

24) “UN 헌장과 다른 국제적 문서에서 보면, ‘평화와 안보’는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이 두 개념 사이의 연합은 너무나 밀접하여, 일반적으로 이 두 개념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제적 안보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반드시 전체 세계 또한 더욱 평화롭게 만들며, 역으로 국제사회에 평화를 이룩하는 것은 항상 국가의 안보를 가져온다.” Nigel Dower, “Peace and Security: Conceptual Notes,” Nicholas N. Kittrie et al. *The Future of Peace*(Washington D.C., Carolina Academic Press, 2003), 997. 이하 ‘군사평화’에 대한 분석은 필자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참고) 유경동, 『평화와 미래』, 110-159.

목적이 되어야 하며 이 전제하에 평화는 안보를 추구하고, 안보를 증진하고, 그리고 안보를 유지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게 되는 것이다.²⁵⁾

그러나 문제는 역사 속에서 안보를 전제한 평화 정책에는 항상 현실주의적 관점이 그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안보를 우선으로 할 때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안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 현재 국제사회는 겉으로는 ‘전쟁 억지’(deterrence)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개발하려는 의도를 가진 국가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는 바로 ‘안보’에 대한 불안증 때문이다. 즉, 주변국가의 무장은 자국의 안보 증강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또 바로 다른 주변 국가의 안보 증강을 부추기게 되고, 이는 결국 국 각 국가들이 끊임없는 무기 개발 경쟁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전쟁억지’를 통해 국제평화를 수립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일견 군비 축소나 또는 각국의 ‘무장해제’(disarmament)로 나타나지만, 실상이 ‘전쟁억지’개념은 모호한 것이다.²⁶⁾ ‘전쟁억지’는 군사력의 규모에 실제적인 변화를 주어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살상의 능력이 있는 군사력을 평화롭게 유지한다는 심리적 차원의 개념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현대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들이 취하는 ‘전쟁억지’ 정책은 무장해제 없이 단지 평화에 대한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전쟁을 포기할 수 있는 형식상의 이점도 있지만 이러한 심리적인 억지력으로 실제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이 평화를 위하여서만 사용될지는 의문이다.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군사평화’를 통하여 살펴보려는 평화운동은 현재 각 국가들이 안보를 전제로 ‘군비축소’나 또는 ‘군비확장’을 주장하

25) Nigel Dower, "Peace and Security: Conceptual Notes," Nicholas N. Kittrie et al., *The Future of Peace*(Washington D.C., Carolina Academic Press, 2003), 100.

26) Oliver O'Donovan, *Peace and Certainty: A Theological Essay on Deterrenc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9), 99-100. 재인용, 유경동, 『평화와 미래』, 112.

는 평화안의 한계를 지적하려는 것이다. 강조하고자하는 핵심은 세계평화는 각국의 무장해제와 인류를 멸절할 수 있는 핵 폐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하여 이 지구사회에서 전쟁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형식적으로 볼 때 전쟁이 없는 국제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각 국가 간 평화에 대한 도덕적인 성숙이 전제가 된다. 즉, 군사력과 연관하여서는 최소한의 안보적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군사력만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력의 보유라는 명분이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거대한 군수산업기업들이 앞 다투어 첨단무기를 개발하는 빌미를 주는 것이며 이러한 기업들을 앞세워 각 국가 또한 군사무기를 경제적 이익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과연 군사적평화가 지켜질 수 있을지는 큰 의구심이 된다. 특히 미래 사회에서 군사무기 개발이 각국과 세계열강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한 평화는 더욱 더 요원하게 될 것이다.²⁷⁾

현대 국제사회에서 군사평화는 지난 20세기 후반까지는 미소 냉전시대를 통하여 형성되었다. 그러나 점차로 산업화 되어가는 전쟁과 지정학적인 군사력 경쟁의 결합은 유례없는 군사적 갈등과 대항을 가열시키고 있다.²⁸⁾ 현재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열강들 사이의 군사력 경쟁은 직접

27) 오도노반(Oliver O'Donovan)은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강대국 및 이란, 북한 등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핵무장 상황은 전쟁 억지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전쟁억지란 핵을 포함한 군사력 기반의 전쟁억지 정책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해방되어 무장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오도노반이 강조하는 무장해제는 최소한의 필요한 군사력으로 최대한의 전쟁 가능성을 막는 것이다. 그는 무장해제와 재무장의 첫 걸음은 각국의 군대가 파괴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구축하고 그 군대가 필요 적절할 정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군사비용을 통해 만일의 경우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덜 파괴적이면서 더불어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현재의 파괴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각국에 대한 적대적 언어를 자제해야 한다고 오도노반은 주장하였다. Oliver O'Donovan, *Peace and Certainty: A Theological Essay on Deterrence*, 100-123. 재인용, 유경동, 『평화와 미래』, 113.

적 무력 충돌 보다는 주로 예비전력구축에 집중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핵 무기는 각국의 군사력을 가늠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평화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핵무기는 전쟁 수행 시 사용되는 다른 종류의 무기, 즉, 생화학 무기, 재래식 무기, 초경량 무기, 지뢰와 같은 비인도적 무기들과 같은 전쟁 무기 중 하나로 취급된다.²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무기가 군사평화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는 이유는 바로 이 핵의 가공할만한 대량살상의 상징성과 파괴성 때문이다.

필자는 이 핵과 연관된 평화사상가들이 바로 ‘전쟁의 억지’를 위하여 제 1원칙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를 강조하였다는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싶다. 지난 세기 평화사상가들은 군비축소와 무장해제, 그리고 핵 폐기를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평화사상가들은 군비축소와 군축 정책에 대하여 반대를 하였으며 점차적으로 핵무기 확산반대와 반핵운동을 전개하여 나갔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국제적 통제와 핵실험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것을 알 수 있다.³⁰⁾ 또한 핵무기확산금지운동을 넘어서 핵무기 폐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심지어는 핵연구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의 윤리적 기준을 강조하는 국제회의의 설립과, 국제지뢰제거운동도

28) D. Held, et. al., “The Expanding Reach of Organized Violence,” *Global Transforming: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21세기 평화학』(하영선 편, 풀빛, 2002), 157에서 재인용.

29) Elise Boulding, *Cultures of Peace: The Hidden Side of History*(NY: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0), 233.

30) 아리스티드 브리앙(Aristide Briand, 1926), 아서 헨더슨(Arthur Henderson, 1934), 필립 노엘메이커(Philip J. Noel-Baker, 1959)는 ‘군비축소’를, 1982년 수상한 알바 뮈르달(Alva Myrdal)과 알폰소 가르시아 로블레스(Alfonso García Robles)는 ‘군축’을 주장하였다. 한편, 라이너스 폴링(Linus Carl Pauling, 1962)은 ‘핵무기의 국제적 통제’와 ‘핵실험 반대운동’을, ‘핵전쟁지국제의학자기구’(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IPPNW, 1985)와 요세프 로트블라트(Joseph Rotblat, 1995)는 반핵운동을 전개하였다.

군사적 평화의 사안으로 주목받았다.³¹⁾

전술한 바와 같이 현대 국제사회에서 군사평화의 성취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세계평화를 위하여 앞으로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여야만 할 것인가? 최소한 세 가지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21세기 초의 국제사회는 지난 20세기에 만들어진 핵무기의 위협에 처하여 있다. 이 결과는 열강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국가들이 자초한 것으로서 과거 고전적인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대치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이 핵전쟁의 가능성은 전쟁의 승패를 떠나 모두가 파멸하는 ‘상호확증파괴’의 공포로 세계를 몰아 놓았다. 따라서 이러한 핵전쟁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기본 조건’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이기에 생태정언명령에 따른 핵폐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앞서도 살펴본바와 같이 안보를 전제로 한 군비축소와 감축은 전쟁의 억지가 아니라 오히려 군비경쟁으로 각 국가들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핵확산과 군비확장을 반대하기 위하여서는 ‘안보’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안보’는 평화의 대안이 아니라 전쟁의 서곡에 불과하다. 평화는 군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정신이 구현된 이상이므로 우리는 평화의 사안을 보다 국제사회의 지평에서 보다 성숙한 도덕과 윤리의 지평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다룬 ‘군사평화’의 문제가 인류의 생존

31) 사토 에이사쿠(佐藤樂作, Eisaku Sato, 1974)의 핵무기확산금지에 대한 노력과 요세프 로트블라트(Joseph Rotblat, 1995)의 핵확산 반대, 그리고 ‘핵 폐기’를 강조하는 과학자 중심의 국제회의인 ‘파그워시 회의’(Pugwash Conferences on Science and World Affairs)와 조디 윌리엄스(Jody Williams, 1997)의 ‘국제 지뢰 금지 운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2005)의 ‘핵무기 확산방지’, 모하마드 엘 바라데이(Mohamed ElBaradei, 2005)의 ‘핵무기 확산 금지 운동’은 평화운동에 관한 좋은 예이다.

과 직결된 현실의 문제라면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영역의 ‘이상’(ideal)에 대하여 눈을 떠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의 조건을 무시한 이상은 자칫 공허한 것이 될 있다. 그렇다고 이상이 없는 현실의 끝이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인류의 멸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차라리 그 이상이 추구하여야 할 정신세계에 대하여 주목하는 것이 인류사회의 평화를 위한 첩경이 아닐까? 이에 다음 장에서 ‘종교평화’를 통하여 현대 평화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자.

5. 종교평화

종교가 평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종교란 신앙에 근거하여 절망에 희망을 주는 숭고한 믿음의 체계라고 한다면, 정치란 제한된 현실을 극복하려는 유토피아적 상상력이 발현된 일종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종교는 한계에 처한 인간과 집단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적 용기를 주며, 정치는 제한된 사회적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제시하면서 현실적인 조건들을 개선하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를 요구하게 된다.³²⁾

종교와 정치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종교의 측면에서는 ‘사랑’과 같은 보편적 원리를 통하여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 성원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다. 반면 정치는 종교의 원리가 피안적 세계의 이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의로운 현실’ 속에서 기층 성원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하여주고 발전시켜 주어야 한다. 즉 종교와 정치가 추구하는 각각의 사랑과 정의는 이상과 현실의 이중적 잣대이면서도 동시에 이들이

32) 유경동, 『평화와 미래』, 193.

적절하게 조화될 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가치체계가 될 수 있다.³³⁾

그러나 이 종교와 정치의 조화는 그 바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 종교는 경제나 정치적 위기에 처한 기층사회와 성원에 대해 사랑에 근거한 도덕적 회복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윤리적 원칙들이 실제 현실과 유리되는 한계성을 노출 할 수 있다. 즉, 정치적 현실을 극복하는 이상의 구체적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치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행하여 정의에 입각한 현실개혁을 추구하지만, 결국 개인과 집단의 이기적 특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권력에 이용당하며, 결국 당파적 분열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전자는 도덕적 정당성을, 후자는 정치적 전략을 제시해 주지만, 동시에 전자는 실제적 전략을 수립하는데, 후자는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된다.³⁴⁾

종교와 정치의 가장 위험한 만남이라면 정치가 그 목표를 종교적 이상과 같은 것을 향하든지 반대로 종교가 그 목표를 정치의 목표와 혼동할 때이다. 예를 들어 정치가 현실적 조건 속에서 국민들을 위한 전략을 종교의 ‘기도’와 혼동하든지, 반대로 교회의 종교적 권위를 세상적인 ‘권력’과 동일시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이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정치는 정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 한계를 극복해야지 거기에 신앙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신앙은 그 권위의 근거를 하나님, 또는 최소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지 세상 권력을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착오이다.³⁵⁾

현대 국제사회에서 종교와 관련된 평화 사상가들을 살펴보면 전반적

33) 위의 책, 193.

34) 위의 책, 194.

35) 위의 책, 194.

으로 위에서 지적한 대로 종교와 정치의 한계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현실 정치의 문제를 종교적 이상으로 극복하려는 평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이러한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평화는 절대 양도할 수 없으며, 국가 권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며 고귀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기독교의 전쟁사관은 초기부터 철저하게 ‘평화를 수호하는 전쟁’에 국한되어 있다. 즉 자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군사력을 통한 방어로 적의 침공을 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당전쟁론’은 어떠한 형태든지 전쟁 자체를 인정하는 결과로 귀착되며 보편적 인류애에 반(反)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을 가진 평화사상가들은 전쟁의 정당성이나 전쟁을 억제하는 현실적인 수단들을 극복할 수 있는 본질적인 정신을 강조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보편적이며 우주적인 사관이 나타난다.³⁶⁾

종교, 특히 기독교와 연관된 평화사상가들의 내용을 정리하여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평화의 원천을 내적인 마음의 상태, 즉 종교적 근원에서 찾는 것으로서 외부의 무력이나 권력이 제공하는 심리적인 안정과 구분하고 있다. 평화는 ‘갈등의 부재’ 또는 ‘권력간 힘의 균형 상태’가 아닌, 일종의

36) 에르네스토 모네타(Ernesto Teodoro Moneta, 1907)의 ‘기독교 박애주의’, 클라스 아르날드손(Klas Pontus Arnoldson, 1908)의 ‘조화’(harmony), 나탄 쇠데르블롬(Lars Olof Jonathan (Nathan) Söderblom, 1930)의 ‘교회연합’, 알베르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 1952)는 ‘인류의 형제애’, 마틴 루터 킹 2세(Martin Luther King Jr., 1964)의 ‘비폭력’, 안와르 엘 사다트와 메나헴 베긴(Mohamed Anwar al-Sadat, Menachem Begin, 1978)의 ‘포용과 번영’, 데즈먼드 투투(Desmond Tutu, 1984)의 ‘반인종차별’ 등이 바로 전쟁과 폭력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종교의 보편적 사관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만델라(Nelson Mandela, 1993)의 ‘화해’, 클레르크(Frederik Willem de Klerk, 1993)의 ‘정의와의 조화’ 개념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불교의 경우 달라이 라마(Dalai Lama, 1989) 역시 분쟁과 억압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평화’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정신의 틀’이자 ‘구조’이다.³⁷⁾ 평화와 정의, 그리고 인간의 우애와 같은 정신적 구조는 인간의 현실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새로운 힘’인 것이다.³⁸⁾

따라서 평화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것으로서 이 세상의 군사적 조건이나 권력의 균형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화는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것이다. 따라서 “평화는 태양빛과 같이 빛나는 것이며, 어린이의 순박한 미소에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기쁨이며 한 가족의 단란함과 같은 것이다. 평화는 인간이 이룩한 진보이며, 정의로운 대의(大義)의 승리이자, 진리의 승리이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평화이며 나아가 평화는 이 모든 것들 그 이상의 것”과 같은 것이다.³⁹⁾

진정한 평화는 ‘내적인 평화’로부터 시작한다. 이 내적인 평화는 심오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외적인 문제들도 이 내면의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정신적인 평화는 외적인 권력과 군사의 평화로 채울 수 없는 본질적인 평화인 것이다. 따라서 평화란 집단이나 제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 각자에게서 그리고 각자의 내면적 평화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가 선결될 때 평화로운 공동체가 가능한 것이다.⁴⁰⁾

물론 각 국가 간 이익을 위한 패권투쟁과, 국제기구 내에서 조차 자신이 속한 국가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영향 받는 정책이나, 그리고 다양한 종교관점 등, 이러한 문제점들을 넘어서 공통적인 평화관을 도출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평화의 특징은 평화에 관한 이론이 아닌 ‘평화 자체’는 양도될 수 없는 인간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다.

37) Frederik Willem de Klerk, “Nobel Lecture,” NPPL.

38) 에르네스토 모네타(Ernesto Teodoro Moneta, 1907)과 클라스 아르날드손(Klas Pontus Arnoldson, 1908)이 강조하였다.

39) Mohamed Anwar al-Sadat and Menachem Begin, “Nobel Lecture,” NPPL.

40) The 14th Dalai Lama, “Nobel Lecture,” NPPL.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를 확신할 때 생기는 믿음이 진정한 평화이다. 위기의 상황들이 인류를 괴롭히고, 다툼이 휘몰아칠 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인류는 평화, 곧 모든 전쟁과 테러를 극복하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둘째, 현대의 기독교 평화사상가들은 평화를 위하여 교회의 협력과 인류의 연대를 도모하는 것도 평화의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교회연합정신은 어떤 일원론적인 평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투쟁해야 하고, 분열과 무분별한 공포 정책에 저항하고, 무분별한 맘몬주의와 증오, 부정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⁴¹⁾ 이러한 연합정신으로 ‘인류의 형제애’를 추구하며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현대 세계 내에 종교평화사상가들은 기독교 사상가들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의 사상가들도 많기 때문에 종교의 협력을 통한 평화도 요청이 된다. 특히 종교 자체의 문제로 전 세계에 내전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은 현실에서 ‘종교평화’는 종교 자체의 진리가 폭력으로 변질되지 않고 종교 간 협력을 통해 평화를 요청하게 된다.⁴²⁾ 이는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종교는 자기의 종교나 정당, 혹은 영역만이 정당하므로 그 영역만을 고집하는 ‘요새전술’이나,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각 종교나 영역 간의 차이점과 모순을 무시하는 ‘무차별 전술’, 그리고 종교나 영역의 통합으로 평화를 실현하려는 ‘포용전술’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한다.⁴³⁾

41) Lars Olof Jonathan (Nathan) Söderblom, “Nobel Lecture,” NPPL.

42) 지구촌 곳곳에서 종교문제로 말미암은 분쟁을 살펴보면 크게 다섯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북아일랜드의 신교와 구교의 갈등이며, 둘째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분쟁으로서 나이지리아, 수단, 보스니아와 코소보, 인도네시아의 아체와 말루쿠, 그리고 동티모르를 들 수 있다. 셋째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 경우이며, 넷째, 가톨릭과 이슬람교의 분쟁으로서 필리핀을 들 수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와 가톨릭의 분쟁지역인 콜롬비아이다.

셋째, 기독교 평화 사상가들은 종교 평화운동의 방식이 비폭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비폭력이란 약자의 어쩔 수 없는 평화전략이 아니라 폭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비폭력으로 폭력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내면세계에 존재하는 서로에 대한 부정과 배타성을 상대에 대한 폭력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을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정신적 힘은 폭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⁴⁴⁾

따라서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는 종교의 평화주의처럼 포괄적이어야 하며 갈등관계에 있는 모든 당사국들을 적극적으로 관용하고 포용할 때 오히려 처음의 갈등은 평화로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변영’과 연관이 될 수 있다.⁴⁵⁾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갈등과 긴장에 대한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입장은 평화를 단지 ‘갈등의 부재’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 갈등을 평화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가 반드시 안정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비폭력을 통한 끊임없는 평화의 노력과 협력은 매우 중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현대 국제사회에서 종교적 영향, 특히 기독교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불교, 유대교, 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 많은 사상가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각 종교가 갖고 있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진

43) Hans Küng, *PROJEKT WELTETHOS* (R. Piper GmbH & Co. KG, München, 1990) 『세계윤리구상』(안명옥 역, 분도출판사, 1992), 156-179.

44)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의 경우 그는 진정한 진리란 헤겔식 논리로 ‘정(thesis)’이나 ‘반(antithesis)’이 아닌 ‘합(synthesis)’의 길에 있다고 보았다. 이 때 비폭력은 그에게 바로 ‘합’의 길이였다. 그는 기독교의 ‘사랑’을 이 ‘합’을 통한 관용과 배려의 관점에서 평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핵심에서 이 세상의 죄를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에서 찾은 것이다.

45) Benny Morris, *Righteous Victims: A History of the Zionist-Arab Conflict, 1881-2001*(NY: Vintage Books, 2001), 690.

리관을 통하여 사랑, 자비, 배려, 그리고 용서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종교적 세계관에 내재된 언어와 인종,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는 숭고한 힘은 이 세상의 폭력을 극복하는 힘이 될 것이다.

평화를 수호하는 일을 걸어로 볼 때는 국가 간 힘의 균형과 국제적 정치정략, 그리고 인간의 공동체적 노력이 중요한 것이 틀림없지만, 종교에서 말하는 우주적이고 보편적 정신 없이 평화를 위한 여타의 모든 노력은 단지 수단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 간의 화해와 일치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세계 평화를 주장하는 종교의 신앙 자체도 그 종교적 신념을 절대화하게 되면 종교 간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따라서 종교 간의 소통을 위한 범종교적인 노력이야말로 세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가 바라는 평화주의는 추상적인 이상주의가 아니다. 그렇다고 현실에서의 국가의 권력과 군사력을 절대화 할 수도 없다. 기독교의 평화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의 사회정의를 이루는 모든 질서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에서 시작한다. 또한 이 하나님의 정의는 피조물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국가권력을 주관하심을 우리는 확신하여야 한다.⁴⁶⁾

평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며 따라서 생명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없는 평화는 공허한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내적 평화가 없는 평화는 공허하며 바로 이러한 평화가 없는 세상은 무질서와 다름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간되심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역이 평화운동이

46)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의 문제는 계시신학의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계시신학은 역사의 지평 안에서 전 창조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역사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만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이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계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계몽주의를 업고 등장한 자연신학적인 맥락에서 도출한 평화사상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 이성의 강조는 자칫 ‘신인동형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을 통하여 진리의 세계관을 추론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혼돈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평화와 인간의 평화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필자는 여기에서 판넨베르크의 계시와 역사신학, 그리고 스텔리 하우어와스의 자연신학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섰다는 점이다. 이 하나님의 평화가 국제사회 속에서도 진리로 정착하게 될 때 인류 사회는 보다 성숙한 평화운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6. 시민평화

필자는 지금까지 국제평화, 인권평화, 군사평화, 그리고 종교평화의 측면에서 현대 국제사회의 평화운동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또한 자국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강대국은 세계를 시장화하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국가 간 갈등 해결은 ‘정당’(just)성이나 ‘정의’(justice)가 아닌 권력을 앞세워 전쟁을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국가의 ‘의지’(will)에 의존하는 현실이다.⁴⁷⁾

앞에서 살펴 본 인권평화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의 기본전제조건이 되지만 각 국가 간의 상이한 인권에 대한 기준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인권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아직도 요원하며 군사평화 또한 ‘안보’를 우선으로 하는 한 군비증강에 따른 국가 간 대립과 긴장은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한편, 종교평화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한 이상적인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득실을 따지는 국제관계 속에서 그 이상적인 역할을 다하는데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필자는 21세기에는 위의 다양한 평화적 노력과 아울러 ‘시민평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해하는 ‘시민사회 중심의 평화전략’은 과거 국가-정부 정책위주의 평화가 아닌, 각 국가의 개인 개인이 세계 시민의 연대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아래로

47) 유경동, 『평화와 미래』, 193. 244-250.

부터의 풀뿌리 평화’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 평화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였듯이 만일 국제사회의 분쟁 상황에서 특정한 국가나 정부의 대리인들에 의하여서만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자칫 각 국가의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국가 권력을 가진 정당이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의 시민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가와 권력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초국가적인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평화전략은 보다 큰 수준의 평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민중심의 ‘시민평화’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⁴⁸⁾

첫째,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과거 냉전 이후 국가 간 분쟁이 다원화되고 지역화 되는 동시에, 그리고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지역 간 시민의 연대는 더욱 중요하다.⁴⁹⁾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연대나 초국가적인 국제기구의 역할이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경우 자칫 국제사회는 공황에 빠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시민의 연대에 의하여 분쟁과 갈등을 다각적이며 다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또한 ‘시민평화’는 국제기구의 민주화를 요구하게 된다. 즉 국제기구가 세계 시민의 평화에 대한 제안을 수렴하고 아울러 국제기구의 정책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개방하여야 한다. 이것은 각국의 주권과 평등을 전제하는 시민의 평화 의식을 전제로 국제사회가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통치’(government)에서 각 국가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48) 이하 ‘시민평화’에 대한 대안은 필자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였다. 참고) 유경동, 『평화와 미래』, 251-271.

49) “탈냉전이 되면서 국제사회에는 대규모 전쟁위험의 감소,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확산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반면, 기존 공포의 균형에서 억눌려 있던 민족·인종·종교·영토·자원 등의 요인에 의한 지역분쟁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지역분쟁의 요인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병철, “탈 냉전기 분쟁관리를 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 『통일전략』(한국통일전략학회, 제3권 제1호, 2003. 7), 296.

이 시민적 의식에서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타개하여 나가는 ‘협치’(governance)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국제 문제에 대한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평화계획과 실천에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⁵⁰⁾

둘째, ‘시민평화’는 세계 경제의 문제를 고려할 때 더욱 더 필요하다. 현대 국제사회는 정치적 사안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그 역학관계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식민지 전쟁과 1, 2차 세계 대전과 같은 대규모의 전쟁이나 폭력은 21세기에 들어서 상대적으로 그 규모와 분쟁 규모도 작고 점점 국지화되는 형세이다. 이는 일면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권력구조가 형성되어 중국, 러시아, 일본의 배후 열강이 서로 균형을 맞추는 구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4개국의 경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제 정치가 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는 정치적인 혼란은 지속되면서 경제적 성장이 맞물리는 혼성적 양상을 띠고 있다.⁵¹⁾

이와 같은 문제는 평화를 위한 시민공동체의 역할에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글로벌리즘의 모토인 시장의 세계화에 맞서는 시민의 연대가 요청되기 때문이다.⁵²⁾ 21세기에 예상되는 세계

50) 한국정치학회 편,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 5: 국제정치와 안보』(법문사, 2008), 167-168.

51) Fareed Zakaria, 『흔들리는 세계의 축: 포스트 아메리칸 월드』(윤중석·이정화·김선옥 공역, 베가북스, 2008), 47-50. 재인용, 유경동, 『평화와 미래』, 255. 현대의 국제정치에서 그 핵심 사안은 국가 간의 분쟁 자체보다는 그것이 자국이나 국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냉전 이후 발생한 주요 무력 분쟁들, 예를 들어 중-소 갈등,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은 정치적 긴장관계가 전쟁으로 확대된 사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경제는 순항했다고 자카리아는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곧 세계 경제 팽창을 가져왔고, 미국과 서유럽을 위시한 1세대 시장이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로 확대되면서, 세계는 글로벌화 되는 경제 중심의 공동체로 재편되고 있다고 그는 보고 있다. 재인용, 유경동, 『평화와 미래』, 255.

52) Fareed Zakaria, 『흔들리는 세계의 축: 포스트 아메리칸 월드』, 65-66. 이하 재인용, 유경동, 『평화와 미래』, 256. 자카리아의 분석에 의하면 글로벌화 된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흘러넘치게 된다. 테러리

평화의 문제는 과거의 대규모 전쟁에 의하여 야기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통한 세계 권력에 의하여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세계평화의 축은 경제적 권력에 의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세계 시민의 연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⁵³⁾ 이와 같은 시민연대가 가능할 때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이해하는 군사산업이나, 전쟁 후 국가단위의 보상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는 전쟁광들의 의도를 억지할 수 있는 보다 평화로운 국제사회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⁵⁴⁾

셋째, 현재 세계 평화는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 미국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을 중심으로 한 1강 3약의 구도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⁵⁵⁾ 이전 냉전 시대와 달리 세계의 세력균형은 미국의 안보정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제평화에서 현실주의적 관점이기도하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정책이 자칫 자국의 패권을 정당화하는 전략에 치우치든지 아니면 이러한 전략이 국제적 수준의 평화적 열망에 미치지 못할 때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만으로 세계 안보를 유지할 수 없으며 미국의 정책이 세계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응하지 못하면 이 자체가 세계 평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중심의 안보정책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

즘이든, 핵확산이든, 전염병이든, 환경파괴든, 경제위기든, 혹은 수자원 고갈이든, 그 어떤 이슈도 다른 국가와의 의미 있는 조정과 협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 정보 그리고 심지어 문화도 글로벌화 되는 추세인데 비해, 공식적인 정치력은 국민국가 혹은 민족국가의 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심지어 국민국가가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을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국민국가들은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점점 더 인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및 비정부 기구에 속한 활동 주역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각각의 주역의 파워와 자신감이 증대될수록, 합의와 공동 행동의 전망은 감소한다. 자카리아에 따르면 바로 이것이 세계의 부상에 따른 핵심적인 도전이다. 때문에 글로벌 성장의 노력이 글로벌 무질서와 와해로 치닫는 것을 막아야 한다.

53) Fareed Zakaria, 위의 책, 145-146.

54) Deepak Chopra, *Peace is the Way*(NY: Three Rivers Press, 2004), 3.

55) 필자는 여기서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의 평화문제를 염두에 두었다.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민과 세계 시민이 연대하여 평화를 지향할 수 있는 시민평화가 필요하게 된다. 한편으로 미국 중심의 군사, 경제적 패권주의를 경계하며 동시에 미국의 세계 안보 정책이 평화를 열망하는 세계 시민의식과 연결되어야 하는 이중적인 요구가 시민평화에 요청되는 것이다.⁵⁶⁾

이를 위하여서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시민의 주체적 의식이 함께 신장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서구와 비서구로 나누는 권력의 이분법적 사고나, 서구의 힘을 절대시하는 의존적인 의식을 개혁하고, 사람의 존엄성과 인권을 인정하는 적극적 평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⁵⁷⁾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도 국가권력과 군사권력, 그리고 평화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경제권력 앞에 맞설 수 있는 ‘시민의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매우 미약하지만 세계 평화를 위한 이 자그마한 힘들이 뭉쳐서 시민이 연대하여 더 큰 평화를 성취하여 나가는 주체성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는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7. 나가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현대 평화주의 개념을 크게 네 가지 분야, 즉 ‘국제’,

56) 샤론 웰치(Sharon D. Welch)에 의하면 미국 중심적인 세계 안보는 각각의 이점과 한계가 있다. 첫째, 미국의 제국주의적 국력은 모든 인류에 이익을 주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둘째, 제국적 권력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미국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련의 국제 협력은 강압의 결과라기보다는 약함의 결과이기 때문에 제국적 권력이 협력의 입장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군사력 또는 경제적 억압(coercion)이 발생하게 된다. 웰치는 실제 일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현대 미국 또한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재인용, 유경동, 『평화와 미래』, 258.

57) 구갑우, 『국제관계학 비판: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평화』(후마니타스, 2008), 33-36.

‘인권’, ‘군사’, ‘종교’로 나누어서 정리하여 보았다. 아울러 이 각각의 영역에서 중시하는 평화안의 핵심을 살펴본 후 21세기의 평화안으로 ‘시민 평화’에 대안을 제시하였다.

세계 평화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평화’에 관한 정신적 보편성을 지구 공동체가 함께 인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 중심의 사상은 인권과 연관 되어 서구와 동양, 북방과 남방의 상이한 문화와 지역, 그리고 지리를 망라하여야 한다. 이 평화에는 흑인과 아시아인, 여성과 어린이와 소수 민족, 나아가 환경과 식량 문제에 관한 인권의 사안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이제 이 평화는 인간을 넘어 자연과 생태계의 보존에까지 이르고 있다.

평화는 이념적인 숭고한 사상이 아니라 앞에서 정리하였듯이 공동체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그릇된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가 지구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점임을 이미 경험하였다. 패권주의적 집단의 권력투쟁은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을 희생하는 파시즘과 독재로 귀결된 경험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의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각 국가와 세계 시민이 협력하는 공동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 간의 공조와 인권문화의 형성, 그리고 안보와 군비경쟁의 군사적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내적 평화에 근거한 평화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은 바로 인류의 정신적 유산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종교의 이념을 넘어서 평화정신을 회복하고 그 정신적 에너지를 지구 공동체에 공급하는 일 또한 공동체의 이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과거의 악을 되풀이하지 않고 진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선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야 말로 현 시대에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임 정신이다. 따라서 평화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차원 있는 규범을 요구한다. 평화로운 지구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국가

의 역할을 정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어떤 집단도 평화를 정치나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는 힘을 필요로 한다. 이 일을 위하여 인류사회는 우리에게 다양한 영역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평화의 유산’을 남겨주었다. 이제 우리의 몫은 우리의 후손이 전쟁과 테러가 없는 세계에 살 수 있도록 현실에서 이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